

의안번호	2217685
의 퇴 인	민병덕 의원
회 답 일	2026. 3. 5.
추계번호	26F10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비용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조의9 (안전관리비용등에 대한 세액공제)	○ 안전관리비용등의 6%(중소기업의 경우 10%)를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29.12.31. ○ 안전근로자 고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안전근로자 1명당 1,0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1,450만원) - (적용기한) 2029.12.31.	신설
2	안 제146조의3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등 배제)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상 주요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 - (대상연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 - (적용 배제 대상 감면·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7),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30의3) - (배제의 예외) 안전관리비용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신설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5조의9 (안전관리비용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46조의3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등 배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안전관리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 세수 감소가 예상됨(안 제25조의9)

- (제1항) 안전관리비용 등에 대하여 6%(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면 법인세·소득세 세수가 감소됨
 - － 개정안은 안전관리비용등의 범위를 관련법 및 시행령에 위임함
- (제2항) 안전근로자 고용증가분에 대한 1,000만원(중소기업은 1,45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면 법인세·소득세 세수가 감소됨
 - － 개정안은 안전근로자의 적용범위 및 세부 요건 등을 시행령에 위임함
- 한편,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에는 위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
 - －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¹⁾를 지칭함

□ 개정안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상 주요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면 세수 증가가 예상됨(안 제146조의3)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상 주요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면 법인세·소득세 세수가 증가함
 - － (적용 배제 대상 감면·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7),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30의3)
 - － (배제의 예외) 안전관리비용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 － 개정안은 세액감면 적용 배제 및 배제의 예외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함

표 1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 2020~2024년

(단위: 명)

산업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설업	367	304	305	305	279
제조업	175	180	163	174	188
기타	298	293	314	300	275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1) 산업재해는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지칭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안전관리비용, 안전 근로자 고용증가분,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규모 및 분포에 대한 전망치와 해당 기업의 과세정보를 결합해야 함
- 개정안의 주요 요건과 적용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제도의 구체적 적용대상을 확정하기 어렵고, 관련 기업의 과세정보 또한 부재해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유섭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유섭	02-6788-4838	useuplee@assembly.go.kr